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국립외교원법시행령
일부개정법률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태열 (외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2. 13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임용시 심의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수 증원

3. 주요내용

○ “교수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(제3조 제2항)”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(인사혁신처, 법제처 등) 및 부내 전부서에 의견 조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2.18.-3.31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34286호

일부개정법률안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교수임용심의위원회) ②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3조 (교수임용심의위원회) ②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외교부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	
연 락 처	(02) 3497 - 7631